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9호 2014. 5. 15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4-67호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2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4-415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----- 8
- 사천시 공고 제2014-417호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 9
- 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-1호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
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----- 10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2)

사천시 고시 제2014-67호

고 시

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축동구호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5월 15일

사 천 시 장

□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

1. 산업단지 명칭(변경없음)

○ 축동구호농공단지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(변경없음)

○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내 유희 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3.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○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
○ 면 적 : 106,424.9㎡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(변경없음)

○ 개발기간 : 2008. 9. ~ 2014. 12. 31.
○ 개발방법 : 민간개발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3)

5. 주요 유치업종(변경)

- (당초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, 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, 가구제조업(32), 기타 제품제조업(33)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
- (변경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, 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, 가구제조업(32), 기타 제품제조업(33)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,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
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
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-31 섬유센터7층
- 성 명 : 대한토지신탁(주) 대표이사 김대성

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(변경없음)

8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
9. 자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(변경없음)

11. 에너지사용계획

- 해당없음 -

12. 유치업종의 배치계획(변경없음)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4)

13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
- 해당없음 -
14.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(변경없음)
15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(변경없음)
16.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(변경없음)
17. 사업시행지역에 존치 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
- 해당없음 -
18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·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·보상 및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(변경없음)
19.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(변경없음)
20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·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(변경없음)
21.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
- 해당없음 -
22. 도시관리계획결정(지구단위계획을 포함)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(변경) - 붙임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5)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·구역) 변경 결정 고시내용

1.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 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	제한내용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개발 진흥 지구	산 업 유통형	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	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	지구단위 계획에 따름	99,998	(증) 6,426.9	106,424.9	사천시고시 제2008-96호 (2008.09.11)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 분	위 치	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	
				기정	변경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변경	1	축동구호 지구단위 계획구역	산 업 유통형	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	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		99,998	(증) 6,426.9	106,424.9	사천시고시 제2008-96호 (2008.09.11)	

3.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

가.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99,998.0	(증)6,426.9	106,424.9	100.0	
I. 산업시설용지	71,969.8	(증)6,426.9	78,396.7	73.7	
II. 지원시설용지	3,161.4	-	3,161.4	3.0	
III. 공공시설용지	24,866.8	-	24,866.8	23.3	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6)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비 고 (용 도)
		기 정	변 경	변경후	위 치	면 적(m ²)	
3	A	71,969.8	증) 6,426.9	78,396.7	공장용지	78,396.7	
					A-1	4,748.5	공장용지
					A-2	12,011.8	공장용지
					A-3	6,143.1	공장용지
					A-4	15,284.9	공장용지
					A-5	6,556.6	공장용지
					A-6	6,245.8	공장용지
					A-7	27,406.0	공장용지
	B	3,161.4	-	3,161.4	지원시설	3,161.4	
					B-1	2,211.4	공동이용시설
					B-2	950.0	공동이용시설
	C	14,792.2	-	14,792.2	공동이용시설	14,792.2	
					C-1	2,413.4	배수지
					C-2	3,896.8	완충녹지
					C-3	2,636.4	오폐수처리장
					C-4	5,845.6	완충녹지
	D	10,074.6	-	10,074.6	도로	10,074.6	
					D-1	10,074.6	도로
	계	99,998.0	증) 6,426.9	106,424.9		106,424.9	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7)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4	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	용 도	공장 및 부대시설
		건폐율	70%이하
		용적률	150%이하
		높 이	5층 이하(20m 이하)
		배 치	건물의 배치 및 형태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(도면참조)
		형 태	
		색 채	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(권장)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8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 2014 - 415 호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「수산업법시행령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○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

면 허 번 호	사천양식 제 23 호	
면 허 면 적	3 ha	
어 업 의 종 류	패류양식	
어 업 의 방 법	살 포 식	
어 장 의 위 치	사천시 서포면 비토지선	
포획·채취·양식물	-	
어 업 의 시 기	연 중	
면 허 기 간	2004. 5. 26. ~ 2014. 5. 25.	
연 장 허 가 기 간	2014. 5. 26. ~ 2024. 5. 25.	
허가일자 및 번호	2014. 5. 12. 제2014-1호	
어업권자	주 소	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 해안길 6-8
	성 명	신 영 자

2014년 5월 15일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9)

사천시 공고 제2014 - 417호

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15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양수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양수기 사용료 납부 반환 규정 신설(안 제9조의 2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(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, 안 제10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)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건설과장)

(우편번호 : 664-701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3275, 팩스 : 831-6035)

사 천 시 공 보

제339호(10)

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 - 1호

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년 5월 15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, 선정기준 마련 및 환경부령 「상수원관리규칙」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·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등을 보완함 (안 제21조)

나. 환경부 조례 개정 요청사항 반영(안 제6조)

(1) 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23조의 2)

→ 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25조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수도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)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수도사업소장)

(우편번호 : 664-804, 주소 :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21, 전화 : 831-5520, 팩스 : 831-6061)